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「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(대통령령)」이 2012. 9. 22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여건에 적합하도록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,

○ 제증명 등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제증명 수수료 징수 요율표 정비【별표 1】(제3조 관련)

· 신설 : 14종(수산물가공업신고 외 13종)
→ 우리군 여건에 필요한 수수료 반영

· 변경 : 4종 (환지 증명 외 3종)
→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표준금액 대로 변경

· 삭제 : 21종 (인감증명 외 20종)
→ 상위법에서 수수료 금액 명시된 자료 등

○ 제증명 등 수수료 납부방법 확대(안 제5조 제2항)

· 현금 → 현금 또는 신용카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도입 확대
도 새마을봉사과-7355(2012.8.2)호

○ 법률제11399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
「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(대통령령)」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민원봉사과

○ 2013년 본 예산액 1,500천원

· 민원수수료카드 이용료 1,000천원
(행정안전부에서 전지자체 계약 체결 시 카드수수료 2%이내 예정)

· 카드단말기 구입 1대 500천원
(군청민원실 시범시행 후 읍·면 확대 예정)

다. 기 타

○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○ 입법예고(2012. 11. 21 ~ 12. 11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○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분석평가 제외대상으로 특기할 사항 없음

○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(붙임 1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『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』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,

○ 제증명 등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성주군 제증명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동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 합니다.